

(앞 쪽)

제 호
검사공무원증
(유효기간: . . .까지)
사 진
3cm × 4cm
(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)
성 명
국토교통부
시·도
시·군

60mm × 90mm (백상지 160g/m²)

(뒤 쪽)

검사공무원증
직위/직급:
성 명 :
생년월일 :
위의 사람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.
년 월 일
국토교통부장관 직인
시·도지사
시장·군수
1. 이 검사공무원증은 본인만 사용해야 합니다.
2. 이 증명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.
3. 이 증명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발행처에 통보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.
4. 사용기간이 지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발행처에 반납해야 합니다.